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74
----------	-----

2022년 12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10월 17일 최기찬 의원외 20명
2.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3. 상정일자 : 제315회 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12월 1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최기찬 의원)

1. 제안이유

-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안 제4조의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입법예고(2022.10.27.~10.31.) 결과 : 의견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장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신부의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안의 발의배경

- 산후조리는 기본적으로 출산 후 몸을 조리하여 임신 전의 건강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인구의 감소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가족규모의 축소로 전통적인 가족 내에서 가능한 산후조리를 어렵게 만들면서 산후조리서비스가 발달함²⁾.
- 보건복지부, 2021 산후조리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1.2%로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산후조리원의 육아 전문가에게 육아방법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35.8%)와 집에서

1)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신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2021. 12. 21.>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12. 21.> [본조신설 2015. 12. 22.]

2) 보건복지부,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 산후조리실태조사결과, 2022-01-26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28.8%)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산후조리는 산모 대부분이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주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천차만별인 비용 격차와 감염 등 안전문제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출산의 부담을 낮추고 산모와 신생아에게 질 좋은 산후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되었음.

3 주요사항 검토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 (안 제4조의5 신설)

- 산후조리원은 주로 민간에서 운영되었으나 신생아 및 산모의 감염 사고로 인한 안전문제가 제기되자³⁾ 산모와 신생아에게 경제적 부담완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5. 12. 22. 「모자보건법」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되었음.
- 2021. 12. 21. 「모자보건법」의 일부개정(2022. 6. 22. 시행)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3) 이해춘,안경애,김기덕,최원욱, 공공산후조리원의 공익적 편익가치 분석, 2019, p.278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음.

- 따라서 상위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시장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현행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2022년 상반기 산후조리원 현황자료⁴⁾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전국에 산후조리원은 총 476개소(붙임1)로 그 중 공공 산후조리원은 1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전라남도 순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민간산후조리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되어 있음.
-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민간산후조리원은 출산 건수가 낮은 지역에서는 개설을 피하거나 경영상 이유로 폐업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현황,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등록일 2022.10.5.)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현황5>

('22.6월 기준)

연번	지역	산후조리원명	개소일	지역내 민간 산후조리원
1	서울 송파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14.2.	<u>있음</u>
2	울산 북구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21.7.	없음
3	경기 여주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19.5.	없음
4	강원 삼척시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16.2.	없음
5	강원 철원군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20.2.	없음
6	강원 화천군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22.2.	없음
7	강원 양구군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20.7.	없음
8	충남 홍성군	홍성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	'13.4.	없음
9	전남 해남군	전남1호 공공산후조리원	'20.12.	없음
10	전남 강진군	전남2호 공공산후조리원	'18.5.	없음
11	전남 완도군	전남3호 공공산후조리원	'19.6.	없음
12	전남 나주시	전남4호 공공산후조리원	'20.12.	없음
13	전남 순천시	전남5호 공공산후조리원	'22.3.	<u>있음</u>
14	경북 울진군	울진군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20.9.	없음
15	경남 밀양시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22.5.	없음
16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13.3.	없음

- 전국에 산후조리원 476개 중 서울·경기에 263개(55.3%), 특히 서울 지역에 116개(24.4%)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민간 자원이 풍부한 서울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기에 앞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하고 중증 장애인이나 청소년부모 등 사회적 약자에게 시설이용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여 기존의 민간산후조리원과 차별화가 필요해 보임.

5)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자체 운영 산후조리원 설치현황, 2022.6월 기준

< 시도별 민간·공공산후조리원 현황6)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16	24	22	24	5	10	8	7	147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8	11	14	11	14	13	26	6	476

- 보건복지부 2021 산후조리실태조사 결과7)에 따르면 월 3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75% 미만인 반면, 월 300만원 이상 가구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0%를 상회하며 가구 소득별 이용에 있어 격차를 보임.
- 보통 2주간 산후조리원의 평균이용요금은 243만원으로 산후조리원 가구소득 200만원미만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이용 이유 중 비용 부담 응답비율은 16.8%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해당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바, 민간산후조리원 비중이 높은 수도권지역에도 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에게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소득별 산후조리원 이용률, 평균이용기간, 비용부담으로 비이용 비율 >

가구소득	이용률	이용기간(일)	비이용 이유 중 비용부담비율
200만원 미만	58.2	11.2	16.8
200~300만원 미만	74.9	11.9	10.9
300~400만원 미만	80.5	12.2	11.0
400~500만원 미만	83.6	12.5	14.0

6)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자체 운영 산후조리원 설치현황, 2022.6월 기준

7) 보건복지부,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1 산후조리실태조사결과, 2022-01-26

4 종합 의견

- 동 개정안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산후조리원 수요와 공급 실태조사를 선행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이 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중증장애인이나 청소년 부모 등 산후조리에 대비하기 힘든 취약계층에게 산후조리 서비스가 제공되어 민간 서비스가 부재한 곳에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다만, 산후조리원 수요와 공급 실태조사를 선행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이 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중증장애인이나 청소년 부모 등 산후조리에 대비하기 힘든 취약계층에게 산후조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해 보임.

붙임1

<2022년 상반기 산후조리원 현황 (22.6.30.기준)>

지역		개소	지역		개소	지역		개소
서울	종로구	2	대구	동구	1	경기	하남시	4
서울	중구	2	대구	서구	1	경기	군포시	4
서울	용산구	1	대구	북구	4	경기	오산시	2
서울	성동구	1	대구	수성구	7	경기	양주시	2
서울	광진구	3	대구	달서구	7	경기	이천시	2
서울	동대문구	6	대구	달성군	2	경기	구리시	4
서울	중랑구	3	인천	미추홀구	5	경기	의왕시	1
서울	성북구	3	인천	연수구	4	경기	포천시	1
서울	강북구	3	인천	남동구	3	경기	여주시*	1
서울	도봉구	3	인천	부평구	2	강원	춘천시	3
서울	노원구	5	인천	계양구	2	강원	원주시	6
서울	은평구	5	인천	서구	8	강원	강릉시	3
서울	서대문구	2	광주	남구	1	강원	동해시	2
서울	마포구	3	광주	북구	3	강원	삼척시*	1
서울	양천구	9	광주	광산구	1	강원	철원군*	1
서울	강서구	9	대전	동구	2	강원	화천군*	1
서울	구로구	6	대전	서구	6	강원	양구군*	1
서울	금천구	2	대전	유성구	2	충북	청주시	10
서울	영등포구	5	울산	중구	2	충북	충주시	1
서울	동작구	2	울산	남구	4	충남	천안시	6
서울	관악구	2	울산	동구	1	충남	공주시	1
서울	서초구	4	울산	북구*	1	충남	아산시	3
서울	강남구	15	세종	세종시	7	충남	서산시	2
서울	송파구*	9	경기	수원시	14	충남	당진시	1
서울	강동구	11	경기	용인시	15	충남	홍성군*	1
부산	서구	1	경기	고양시	10	전북	전주시	7
부산	동구	2	경기	성남시	21	전북	군산시	2
부산	부산진구	2	경기	화성시	11	전북	익산시	2
부산	동래구	1	경기	부천시	6	전남	목포시	2
부산	남구	1	경기	남양주시	4	전남	여수시	2
부산	북구	3	경기	안산시	6	전남	순천시*	4
부산	해운대구	3	경기	평택시	6	전남	나주시*	1
부산	사하구	3	경기	안양시	7	전남	광양시	1
부산	금정구	1	경기	시흥시	3	전남	강진군*	1
부산	연제구	3	경기	김포시	6	전남	해남군*	1
부산	수영구	1	경기	파주시	5	전남	영광군	1
부산	기장군	2	경기	의정부시	6	전남	완도군*	1
부산	강서구	1	경기	광명시	6	경북	포항시	3

지역		개소
경북	경주시	2
경북	안동시	1
경북	구미시	5
경북	영천시	1
경북	울진군*	1
경남	창원시	14
경남	진주시	3
경남	통영시	1
경남	김해시	4
경남	거제시	1
경남	밀양시*	1
경남	양산시	2
제주	제주시	5
제주	서귀포시*	1

2022년 6월기준,

- 전국 민간·공공산후조리원 총 476개소
- 서울특별시 민간산후조리원 총 115개소
(공공산후조리원은 송파구 1개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역(*표시)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기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74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10월 17일

발 의 자: 최기찬, 경기문, 김기덕,
김성준, 김용일, 김원태,
김춘곤, 김형재, 박승진,
박영한, 박칠성, 박환희,
서준오, 신복자, 이영실,
이종태, 임만균, 전병주,
최민규, 최재란, 홍국표
의원(21명)

1. 제안이유

-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안 제4조의5)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장은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4조의5(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장은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p>